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92호	제 출 자	윤금숙 의원 외 7명
제 출 일	2022. 8.19.	회부연월일	2022. 8.19.

1. 제안이유

-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신고 의무 조항 신설 (안 제4조의2)
- 나.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명시 (안 제6조)
- 다. 지원 기준 세분화 및 명시 (안 제7조 ~ 제9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 개정안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